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996. 1. 22.

교육사회위원회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월 12일

○ 회부일자 : 1996년 1월 12일

3. 제 안 이 유

○ 학교신설,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분교장개편, 분교장폐지,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교명변경과

○ 교육법 제8조, 제75조 및 제81조 등의 개정(법률 제5,069호, '95.12.29)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함

4. 주 요 골 자

○ 신설 학교(청원군 오창고등학교외 5교) : 불임

○ 분교장개편 학교(청원군 기암국외 6교) : 불임

○ 분교장폐지 학교(제천시 금성국 장선분교장외 8교) : 불임

○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학교(청주시 교동국민학교외 3교) : 불임

○ 교명변경 학교(청주시 산남국민학교) : 불임

○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 학교(청주시 주성국의 310교) : 불임

○ 다른 조례의 개정(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외 3건) : 불임

5. 검토 보고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 농촌지역의 이농현상과 택지개발지구내 대단위 주택건설로 인한 급격한 교육인구 이동으로 청주·청원지역에서 증가하는 중학교 졸업생 수용 및 2부제수업 해소와 과대학교를 분리하기 위한 '96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의 6개교의 신설요인이 발생되고
- 전학년이 3학년 이하일 경우 본교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므로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분교장은 지역 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통폐합하되, 3복식 대상학교를 우선 통폐합하는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라 분교장개편학교 6개교, 분교장폐지학교 8개가 발생되고
-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학교 3개교가 발생되고
- 행정구역인 수곡동과 학교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역주민이 교명변경을 요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명변경을 하는 등

'96 초·중·고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및 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따른 변경과 지역주민의 요구와 합리적 이유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육법 제8조, 제75조 및 제81조 등의 개정(법률 제5,069호 '95. 12. 29)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변경하고, 적용 내용의 통일성으로 미루어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 조례안 : 별 첨